

등록번호	건강도시과-18708
등록일자	2014.12.29.
결재일자	2014.12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건강도시팀장	건강도시과장	보건소장
배현우	주상천	백기운	12/29 홍혜정
협 조	위생과장	임종순	
	의약과장	이은주	
	건강관리과장	이효춘	

- 건강한 금연도시 만들기 -  
**2015. 금연사업 추진계획**



보 건 소  
 건강도시과

# 2015. 금연사업 추진계획



- ◆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관련 시설물 설치 등 금연환경 조성
- ◆ 구민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내실화 및 금연교육사업 확대 실시
- ◆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 독려

## I 추진 방향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 의거,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구민건강증진 도모
- 중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
- 금연클리닉 내실화를 통한 금연결심자 적극지원으로 금연성공률 증대

## II 현황

### 1 중구 흡연율 현황

※지역사회 건강통계 (단위 : %)¹)

	흡연율²)	금연시도율³)	금연교육 경험률⁴)
2012년	26.2	24.3	3.6
2013년	24.1	24.2	3.4

### 2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

	등록자수			6개월 금연성공률
	계	남성	여성	
2013년	1,628명	1,538명	90명	51.1%
2014년	1,700명	1,560명	140명	51.6%

1)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다음해 3~4월, 전년도 수치 집계(2014.12월 현재 2014년 통계는 분석되지 않음)  
 2) 평생5갑(100개비)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(“매일 피움”, “가끔 피움”)의 분율(%)로 정의한다.  
 3) 현재 흡연자(“매일 피움” 또는 “가끔 피움”) 중 최근 1년(365일)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분율(%)로 정의한다.  
 4) 최근 1년(365일) 동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(%)로 정의한다.

### 3 금연지도점검 실적

	과태료부과 건수	과태료 부과 금액
2013년	258건	26,600,000원
2014년	351건	34,950,000원

### 4 담배소매인 업소

(단위 : 개소)

	'2011	'2012	'2013	'2014. 하반기
대상업소	1,175	1,188	1,182	1,164

### 5 금연시설

가. 공중이용시설 현황 : 총 7,163개소

(단위 : 개소)

어린이집	유치원	초중고교	대학교	청소년 시설	어린이 운송차	사무·복합 건축물	게임 제공업소	음식점
65	13	36	3	2	6	306	78	5,711
만화 대여업소	의료기관	청사	교통시설	대규모 점포(상가)	관광업소	공연장	어린이 놀이시설	학원
3	554	30	18	62	32	21	91	74
도서관	체육시설	사회복지 시설	목욕장	총계	※공중이용시설 26종 우리구 해당시설			
3	2	4	49	7,163				

나. 실외금연시설 현황 : 총 221개소

- 도시공원(도시자연공원, 근린공원, 어린이공원) ----- 37개소
- 학교주변절대정화구역 ----- 39개소
- 가로변 버스정류장 ----- 144개소
- 금연거리 ----- 1개소

### 6 금연사업 인력 및 조직

(단위 : 명)

	총 계	팀 장	행정업무(담당)	단속요원 <sup>5)</sup>	금연클리닉
인 원	6	1	1	2 (행정1, 시간제1)	2 (시간제2)

## 사업체제도

목 표	사업명	사업내용
금연 환경 조성	금연구역 확대	관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
		금연구역 설정 및 시설물 설치
		흡연부스 등 흡연시설 설치
		금연마을만들기
	금연홍보	상시 금연홍보
		집중 금연홍보
	흡연지도점검	상시 흡연지도점검
집중 흡연지도점검		
흡연을 저감	금연클리닉운영	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
		이동금연클리닉 운영
	흡연예방·금연교육	지역주민 금연교육
		청소년 흡연예방교육
		사업장 및 직장인 금연교육

## 세부추진계획

### 1 금연구역 확대

#### 가. 관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

■ 기 간 : 연 중

■ 대 상 : 관내 모든 음식점 쉼터(18개소), 어린이집(65개소) 주변 50m 이내

■ 내 용 : 해당 시설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흡연단속 및 금연제도 실시

■ 방 법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에 따른 관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
- 한국외식업중구지회 협조, 음식점 내 금연문화 정착 유도
- 2015. 4월 중 관내 쉼터(18개소) 및 추가조성된 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추진
- 2015. 8월 중 관내 어린이집(65개소)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추진

■ 소요예산 : 15,000천원

- 일반운영비 : 15,000천원(금연구역 관리비)

## 나. 금연거리 설정 및 시설물 설치(예정)

- 기 간 : 2015. 9월 ~ 11월
- 대 상 : 총 2개소 설치 검토
  - 제1지역 : 굿모닝시티 동대문 ~ 두산타워(양측 440M)
  - 제2지역 : 한국은행 ~ 송례문(양측 450M)
  - ※ 금연 관련 여론 및 금연거리 실효성 검토 후 추진
- 내 용 :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통행인의 간접흡연 예방
- 방 법
  - 금연거리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대시민 홍보
  - 홍보기간 동안 배너기를 활용, 금연거리 인식 확대
  -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및 금연타일 석공사 등 금연시설물 설치
  - 기존 금연거리를 확대하여 주변부를 금연존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



- 소요예산 : 35,000천원
  - 일반운영비 : 35,000천원(시설물설치비)

## 다. 흡연부스 등 흡연시설 설치

- 기 간 : 2015. 1월, 필요 시
- 대 상 : 을지로입구역 7, 8번 출입구 주변,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
- 내 용 : 금연구역 설정지에 흡연부스 등 흡연시설을 설치하여 흡연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, 지정된 장소 외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
- 방 법
  -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흡연형성지에 대한 흡연부스 설치
  - 관련부서(도시디자인과, 가로환경과, 도로시설과, 교통행정과) 검토 요청
  - 흡연인구와 비흡연인구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흡연구역 설정



- 소요예산 : 비예산
  - 흡연부스 설치 요청사의 자부담 설치 검토

## 라. 금연마을만들기 추진

- 기 간 : 2015. 3월 ~ 11월
- 대 상 : 관내 15개동 시범구역 내 주민, 상인, 직장인 등
- 내 용 : 각 동마다 1개소씩 금연마을을 지정하여 매너존(manner-zone) 설치 운영
- 방 법
  - 동별로 흡연 관련 민원이 많거나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여 매너존(manner-zone) 설치
  -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「금연지킴이」를 조직, 매너존 내 금연계도 실시
    - 홍보물 및 홍보용품 건강도시과 지원
  -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동주민센터 방문 및 활동
    - 6개월 금연성공 시,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
  - 사업 실시 후, 동별 상호교차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도 확인
    - 지표 : 금연클리닉 등록율, 6개월 금연성공률, 매너존 현장평가
    - ※12월 평가 후, 동행정평가 반영 검토
- 소요예산 : 20,000천원
  - 일반운영비 : 20,000천원(매너존 설치 및 홍보용품 지원)
  - ※필요 시, 예산 전용 및 목변경 검토

## 2 금연홍보

### 가. 상시 금연홍보

- 기 간 : 연 중
- 대 상 :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
- 내 용
  - 홈페이지, SNS, 소식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
  - 건강도시과 및 보건소 내부직원을 활용한 대민 직접 홍보
  - 어르신금연홍보단, 금연공원자율봉사대 활동 전개
  - 청소년, 대학생, 직장인 등 단체 내 자원봉사단 홍보활동

## ■ 방 법

-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월별 금연소식 게재
  - 금연정보, 금연홍보, 금연서포터즈 활동사진 게재 등
- 보건소 페이스북을 활용한 금연홍보
-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 금연사업 시행 시, 일간지 보도 및 홍보
- 조례 개정사항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지속 홍보
- 보건복지부, 서울시 및 보건소 자체 홍보물, 리플릿 제작
- 관내 각 동별 어르신금연홍보단 운영
  -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금연홍보 및 공원 내 흡연행위 등 계도
  - 14개동 48명 어르신 참여
- 금연공원자율봉사대 활동 전개 및 확대운영
  - 관내 금연공원 순찰 시 청소년 및 공원 내 흡연자 계도 및 금연홍보
  - 주민 자생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연 환경 조성
- 청소년, 대학생, 직장인 등 단체 내 자원봉사단 금연홍보활동 지원(필요 시)

## ■ 소요예산 : 23,880천원

- 일반운영비 : 21,000천원(홍보물 제작 등)
- 일반보상금 : 2,880천원(자율봉사대 실비보상)

## 나. 집중 금연홍보

■ 기 간 : 1월 ~ 2월, 7월, 필요 시

■ 대 상 :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

■ 내 용

- 금연캠페인 및 금연홍보관 운영
- 보건소 전직원 집중합동홍보 실시

■ 방 법

- 알뜰장터, 음식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에 금연홍보관 운영
-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기초건강체크 및 1:1 금연상담 및 홍보 실시
- 학교 축제 시, 금연판넬, 교육자료, 홍보물 등 지원

-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금연홍보 등 금연 거리캠페인 실시
  - 보건복지부, 서울시 및 보건소 자체 홍보물, 리플릿 제작
  - 집중합동홍보 실시
    - 홍보기간 : 2015. 1월 ~2월(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사항 계도기간), 7월 필요 시
    - 조 직 : 보건소 전직원
    - 편 성 : 각 부서 2인 1조씩 5~7개조 구성
    - 홍보방법 : 매일 2회
      - ▶ 주간홍보 : 14:00 ~ 16:00[2시간]
      - ▶ 야간홍보 : 18:00 ~ 21:00[3시간]
    - ※상시 금연홍보와 병행 실시
    - ※야간 금연홍보 및 지도점검 관련, 수기초과근무 검토
    - 지 역 : 관내 동별 순회 홍보
    - 홍보내용
      - ▶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 집중 홍보
      - ▶ 과태료 부과 내용 및 의무위반자 처리 절차 안내
      - ▶ 금연표지 부착 요령 및 흡연실 운영방법 설명
      - ▶ 금연거리 홍보
        - 남대문로 금연거리 특성에 맞춰, 다국어로 표기된 홍보물 제작 배포
- 소요예산 : 「가」목 포함

### 3 흡연지도점검

#### 가. 상시 흡연지도점검

■ 기 간 : 연 중

■ 추진근거
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, 제28조(보고·검사)
-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(과태료), 제35조(과태료부과장수절차), 동법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
- 국민건강증진법 부칙<제10781호, 2011.6.7.>제1조(시행일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,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



■ 대 상 : 관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

■ 내 용

-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
- 금연 관련 법령이행상태 모니터링(지도점검)

■ 방 법

- 금연 관련 법령이행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, 스티커, 포스터 등의 홍보물 부착과 금연구역 계도 활동 병행
- 평소 자율적으로 금연구역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
- 소매점 담배 광고 모니터링 등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발굴
  - 흡연을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연 사업 발굴
-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
  - 단속기간 : 연 중
  - 조 직 : 건강도시팀
  - 편 성 : 2인 1조, 총3~4개조 운영
    - ※흡연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확보, 연중 금연지도원 2~3인 활용
    - ※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과 동행 단속 실시
  - 단속방법 : 매 일
    - ▶ 주간단속 : 09시 ~ 14시 또는 13시 ~ 18시[5시간] 탄력근무
    - ▶ 야간단속 : 18시 ~ 23시[5시간]
      - ※운영시간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간/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
      - 예) 주간 : 공공청사, 청소년이용시설, 의료기관, 도서관
      - 야간 : 음식점, 호프집, PC방 등 업소 밀집지역
      - ※주·야간단속은 조별로 번갈아 가며 실시
  - 지 역 : 관내 금연구역
  - 단속내용
    - ▶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 집중 홍보
    - ▶ 과태료 부과 내용 및 의무위반자 처리 절차 안내
    - ▶ 금연표지 부착 요령 및 흡연실 운영방법 설명

- 위반사항 조치
  - ▶ 위반자 조치
    -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 폐해 등 금연교육 실시
    -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, 과태료 징수 절차 진행
  - ▶ 위반 시 과태료 부과 : 법 제9조 4항 위반사항
    - 금연시설로서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정된 업소의 경우 (1차위반 170만원, 2차위반 330만원, 3차위반 500만원)
  - ▶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: 10만원

■ 소요예산 : 86,769천원

- 인 건 비 : 65,613천원(금연단속원 임금)
- 일반운영비 : 12,156천원(금연단속 운영비)
- 일반보상금 : 9,000천원(금연지도원 활동비)

## 나. 집중 흡연지도점검

■ 기 간 : 각 분기별(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합동지도단속 시기)

■ 대 상 : 관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

■ 내 용

-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
- 금연 관련 법령이행상태 모니터링(지도점검)

■ 방 법

●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

- 조 직 : 건강도시과 합동팀 구성

- 편 성 : 2인 1조, 총3~4개조 운영

※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과 동행 단속 실시

- 활동기간 : 복지부·서울시 합동지도단속 시기(3월, 6월, 9월, 12월)

- 활동주기 : 해당 월 1주일 지정(5일 실시)

- 단속내용 등은 상시 흡연단속(지도점검)과 동일

## 4 금연클리닉 운영

### 가.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

■ 기 간 : 연 중

■ 대 상 : 주민, 관내 사업장 직장인 및 학생 등

■ 내 용

- 내소 흡연자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간 9회 금연상담 진행
- 금연상담 및 보조요법(니코틴보조제, 행동요법) 처방
- 추구관리(Follow-up) 진행
- 6개월 간 전화상담 및 문자격려, 12개월까지 금연성공 지속여부 확인
- 6개월 금연성공 시, 기념품 등 제공
-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 증가에 대한 분석 후 사전예약제 검토

■ 소요예산 : 87,086천원

- 인 건 비 : 53,900천원(금연상담사 임금)
- 일반운영비 : 33,186천원(금연클리닉 운영 및 약제비)

### 나. 이동금연클리닉 운영

■ 대 상 : 관내 기업, 사업장, 금연아파트, 재래시장, 동주민센터 흡연자

■ 내 용

- 기업단위, 단체단위 금연 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
-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서비스
- 6주간 방문 및 6개월 추구관리,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3, 6개월 추가방문
- 필요 시, 전문강사를 활용한 금연교육 지원
- 취약계층(여성흡연자, 시장상인, 영세사업장 등) 신청 시 우선적용

■ 소요예산 : 「가」목 포함

※ 목 표 : 2015년 금연클리닉 등록치(내소 및 이동클리닉 합계치)

총 계	남 성	여 성	6개월 성공률
1,800명	1,600명	200명	53% 이상

## 5 흡연예방·금연교육

### 가. 지역주민 금연교육

- 기 간 : 2015. 3월 ~ 10월
- 대 상 : 중구민
- 교 육 자 :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,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빙
- 내 용 : 지역주민 중심 금연교육 실시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생활권 만들기 추진
- 방 법
  - 각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대상 금연교육 실시
  - 해당동 주민센터, 경로당, 사회복지시설 등 구민 운집시설 직접 방문
  - 단순교육에 그치지 않고, 금연교육 후 금연결심자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
  - 금연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, 교육내용 지역주민 간 전파 독려
  - 주민 대상 금연교육 만족도조사 실시
- 소요예산 : 11,710천원
  - 일반운영비 : 11,710천원(교육 및 교육자재비)

### 나. 청소년 흡연예방교육

- 기 간 : 2015. 3월 ~ 10월
- 대 상 : 관내 36개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- 교 육 자 :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,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빙
- 내 용 : 학생들의 흡연 조기에 예방 및 금연 당위성 설명
- 방 법
  - 3월 학기초부터 학교로 직접방문하여 주기적 흡연예방교육 실시  
※건강관리과 미래건강팀 협조하에 추진
  - 폐모형 활용 실험 등 학생들 눈높이 교육 실시
  - 이동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실 운영
  -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빙
- 소요예산 : 「가」목 포함

#### 다. 사업장 및 직장인 금연교육

- 기 간 : 2015. 3월 ~ 10월
- 대 상 :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
- 교 육 자 :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,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빙
- 내 용 : 성인 대상 금연교육
- 방 법
  - 관내 1,000m<sup>2</sup>이상 공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사업장에 교육참여 공문 발송
  - 홈페이지, 아파트 게시판 등에 교육신청안 게시
  -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
  - 이동금연클리닉 직장인 금연교실 운영
  -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빙
- 소요예산 : 「가」목 포함

### V

## 추진 일정표

목표	사업명	사업내용	추진 일정 (월)	비고
금연 환경 조성	금연구역 확대	관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	연 중	
		금연거리 설정 및 시설물 설치	2015. 9월 ~ 11월	
		흡연부스 등 흡연시설 설치	2015. 1월, 필요 시	
		금연마을만들기	2015. 3월 ~ 11월	
	금연홍보	상시 금연홍보	연 중	
		집중 금연홍보	2015. 1월 ~ 2월, 7월, 필요 시	
	흡연지도점검	상시 흡연지도점검	연 중	
집중 흡연지도점검		2015. 3월, 6월, 9월, 12월		
흡연 률 저감	금연클리닉운영	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	연 중	
		이동금연클리닉 운영	연 중	
	흡연예방· 금연교육	지역주민 금연교육	2015. 3월 ~ 10월	
		청소년 흡연예방교육	2015. 3월 ~ 10월	
		사업장 및 직장인 금연교육	2015. 3월 ~ 10월	

## VI

##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내 용	금 액	비 율(%)
1	금연구역 확대	15,000	5.3
2	금연거리 설정 및 시설물 설치	35,000	12.4
3	금연마을만들기 추진	20,000	7.1
4	금연홍보	23,880	8.5
5	흡연지도점검	86,769	31.2
6	금연클리닉 운영	87,086	31.3
7	흡연예방·금연교육	11,710	4.2
사업비 총액		<b>278,095</b>	<b>100</b>

## VII

## 행정사항

- 전광판 일간지 및 지역신문 보도, 중구광장(소식지) 활용 안내 및 홍보 》 공보실
- 구청 및 보건소홈페이지 금연사업 및 관련내용 상시 홍보 》 전산정보과
- 각종 금연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》 자치행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
-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 홍보 협조 》 한국외식업중구지회
- PC방 금연홍보 및 지도단속 안내 》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종로중구지부지회

## VIII

## 기대효과

- 흡연자의 금연유도 및 금연정책의 대시민 체감도를 향상시켜 금연 환경 조성
-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확산
- 금연문화 정착과 함께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